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3601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36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73991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허주리

변론 종결 2020. 4. 23

판결선 고 2020. 5. 2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739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방이라 한다), C, D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판사 최호식판사 이종채